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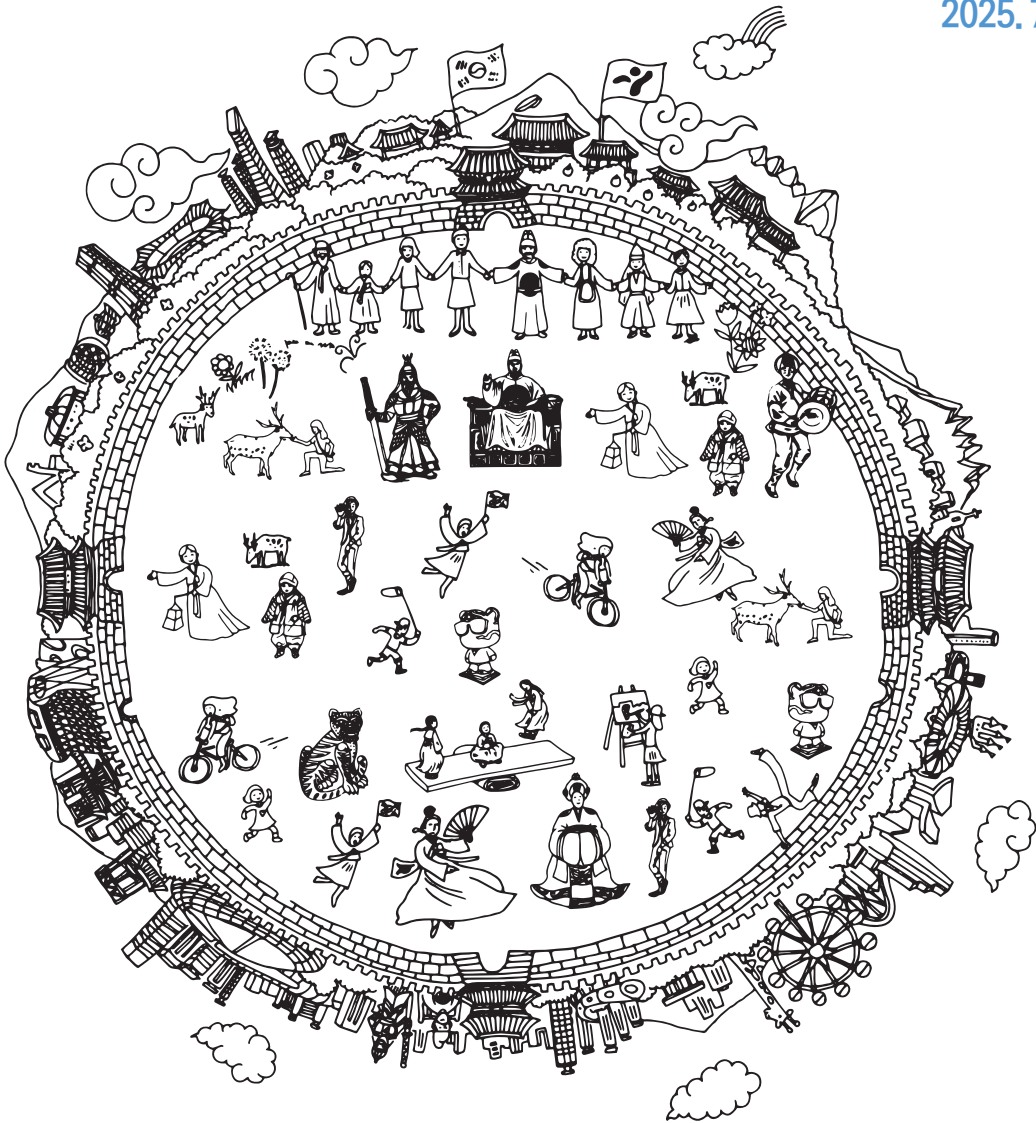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74호
2025. 7. 1.(화)



목 차**◆ 자치법규 등****[규 칙]**

제470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70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제4708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규제혁신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기획관·규제혁신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으로,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과평가, 창의행정”을 “성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규제혁신기획관은 제15항에서 제16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4.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5.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제10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창의규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정책 수립
 6. 규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9. 규제총괄관(민간전문가)의 규제개혁 자문·조정·대외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등록규제 관리 및 자체규제 정비
 11.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
 12. 규제개선 과제 점검 및 평가·성과관리
 13.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9항제3호 중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 관련 자료·법제심사 사례 체계화 및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 ⑯ 규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 발굴 및 검토
 5. 규제개혁 관련 시민 제안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및 관리
 6. 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7.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7조의2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서울디지털재단” 을 “서울AI재단” 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7조의7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용산입체도시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용산입체도시담당관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를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지하안전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행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지하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안전관리업무” 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 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제20조제10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9호) 중 “연구” 를 “연구, 기술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제17호, 제22호 및 제2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3호) 중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중전의 제22호) 중 “검토”를 “검토,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17.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22.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24.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18.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19.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20.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23.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환경개선과장”을 “지하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도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을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위원회 및 지하안전전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20조의2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주거환경개선과장·전략주택공급과장·재정비축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주거환경개선과장·전략주택공급과장·재정비축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실장 및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을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천 유지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을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 및 토목설계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 및 토목설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조경시설과·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을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대심도과·조경시설과 및 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 및 대심도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생산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생산부장·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77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미래전략연구센터”를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로, “수질분석부장·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을 “수질분석부장 및 수도연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후 및 물 산업 환경변화 대응전략 연구
4. 국내외 물 시장 진출정책 및 경영전략 개발

제81조제2항 중 “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를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로, “두며”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전략사업부·한강여가사업부”를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수상활성화부 및 한강수상안전부”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전략사업부장·한강여가사업부장”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강수상활성화부장 및 한강수상안전부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5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대재해·재난·한강공원 통합관제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제85조제4항제2호 중 “환경순찰”을 “환경순찰(사건·사고 보고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강보안관·공공안전관·사회복무요원 인사 및 복무관리
6. 공원 내 둔치 청소업무(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포함) 및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85조제4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녹지, 생태공간, 조경시설”을 “녹지·조경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풍수해·제설 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공원 매점 및 화장실 설치

제85조제7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공원 재조성·유지관리
5.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
6. 생태계 조사, 복원, 보전 및 유지관리
7.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8. 캠핑장 및 수영장·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사항

9.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제8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강전략사업부장”을 “한강수상활성화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교통(한강버스 포함) 도입, 운영 및 활성화

3.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8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강여가사업부장”을 “한강수상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유치”를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2.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제도·단속

3. 관공선관리센터 운영 및 한강수상보안관 복무관리

9. 긴급도강계획 수립 및 시행

11.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및 한강 수질 오염 방재

12.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질 관리, 수상 청소에 관한 사항

13. 낚시터 운영·관리 및 한강 조류·어종 관련 조사 지원

제86조제2항 중 “운영총괄과, 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수질과”를 “운영총괄과·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관리과”로, “환경수질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강개발기획과·한강문화관광과”를 “한강개발기획과·한강문화관광과 및 자연성회복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연성회복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한강수상활성화부에 수상교통사업과·수상기반시설과 및 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 수상교통사업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상기반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한강수상안전부에 수상안전과·수상운영과 및 수상관리과를 두고, 수상안전과장 및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상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9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를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31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로

한다.

제9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에 진료과를 둘 수 있다.

제103조 및 제10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5조(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3조제1항 중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를 “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과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을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진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문화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2. 공공독서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6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18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0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3조 본문 중 “전략기획실·관리부”를 “경영관리부”로,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을 “경영관리부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삭제한다.

제124조의 제목 “(관리부)”를 “(경영관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를 “경영관리부에 총무과·기획홍보과·운영과·시설과”로, “총무과장”을 “총무과장·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대공원 미래 전략 수립·관리 및 평가
 2. 공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총괄
 3.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총괄
 4. 마케팅·홍보 업무계획 수립·총괄 조정
 5. 민·관 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자 포함)
 6. 축제·문화 행사 기획 운영(공원 점용 행사 허가 포함)
 7.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작성 배포(방송 매체 촬영 협조 포함)
 8. 서울대공원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 총괄
 9.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제124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구장 운영 관리
- 제124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자연캠프장”을 “캠핑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및 제12호(중전의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정원조성 및 수목 식재
 17. 산사태 및 사방시설 관리 등 임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산림욕장, 숲길 조성 및 관리
 12.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 제126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28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30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131조제1항 중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을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서울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총괄
 - ⑦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32조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을 “자치경찰운영과·자치경찰협력과·자치경찰사업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경찰총괄과장” 을 “자치경찰운영과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제1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경찰지원과장” 을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안·안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발굴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치안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지역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5, 제20조의2, 제103조, 제1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담당관” 을 “규제개선담당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담당관” 을 “규제개선담당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담당관” 을 “규제개선담당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담당관” 을 “규제개선담당관”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등)”을 “(행정예고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부합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행정예고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없이”를 “행정예고심사 없이”로,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을 “행정예고심사를”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예고심사, 규제심사”를 “행정예고심사”로 한다.

별표 중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의 비고란 중 “법무담당관”을 “창의규제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법무담당관(규제심사)”을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으로 하고,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을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호 및 제9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4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
장” 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의 과(담당관)란 중 “한강여가사업부” 를 “한강수상안전부” 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상시화 ·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본청 · 합의제 · 소속기관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기술서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 및 기획조정실 부서 간 사무조정

-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개선담당관’ 을 신설하고, 창의행정담당관을 ‘창의규제담당관’ 으로 재편하며, 기획담당관 · 조직담당관 · 평가담당관 · 법무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조정

나. 지하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본청 ·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분장 조정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관리과 및 보행환경개선과를 통합하며,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안전예방과 간 사무분장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를 ‘자치경찰운영과’ 로, 자치경찰지원과를 ‘자치경찰사업지원과’ 로 명칭변경하고,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다.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분장 정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등 소속기관 재편

라. 투자출연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지도 · 감독 기구의 사무분장 현행화

- 서울디지털재단→서울AI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 주택실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의 개방형 직위해제에 따른 규칙 개정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 25.6.2.)에 따라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81	429	1,129	5,164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31	420	350	4,974	225
-------	--------	-------	-----	-----	-------	-----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6	16		1	9	
부이사관	26	16		1	9	

같은 표 구분란 중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또는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란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며,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을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연구관(수의)또는기술서기관”을 “연구관(수의)또는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며, “연구관(공업·보건·환경)또는기술서기관”을 “연구관(공업·보건·환경)또는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4급 소계	270	165	19	8	71	7
서기관	105	78	8	7	9	3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시설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해양수산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33	1,090	56	58	371	58
행정	751	550	52	26	71	52
사서	4			1	3	
시설	223	152			70	1
행정또는녹지	16	5			11	
행정또는시설	79	63			13	3
행정또는해양수산	2				2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 녹지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녹지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아래 행정·녹지또는시설란을 신설하며, 농림운영란 아래 사육운영란을 삭제한다.

6급 소계	3,737	1,966	177	105	1,390	99
행정	1,434	889	147	44	285	69
녹지	79	41			38	
의료기술	48	2		3	43	
환경	49	31		12	6	
시설	617	353	3	2	240	19
위생	7			1	6	

시설관리	29	3			26	
행정또는녹지	9	5			4	
행정또는사회복지	16	14	1			1
행정·공업또는시설	82	73			8	1
행정·녹지또는시설	8				8	
녹지또는시설	2				2	
통신운영	7	3		1	3	

같은 표 7급 소계란, 사서란, 해양수산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조리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간호또는보건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공업또는환경연구사란, 방재안전또는공업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4	1,314	122	131	1,660	57
사서	21	1	1	7	12	
해양수산	7				7	
시설	548	236	3	5	296	8
방재안전	2	1			1	
방송통신	61	34	3	4	20	
조리	2	2				

행정또는공업	10	2		1	7	
행정또는시설	39	34			3	2
행정또는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또는시설	42	39		1	2	
행정·간호또는보건	2				2	
행정·공업·시설·전 산	11	11				
공업또는환경연구소	1			1		
방재안전또는공업	2				2	
전기운영	32	1			31	
기계운영	52	2	1	1	48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방호란, 공업란, 식품위생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전기운영란 아래 기계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4	120	38	42	863	1
행정	94	13	7	8	66	
사회복지	10	1			9	
사서	5			2	3	
방호	79	24	6	3	46	
공업	99	4	2	4	89	

식품위생	2				2	
위생	6	3			3	
시설관리	226			2	224	
운전	77	10	3	11	53	
행정또는시설	13	3			10	
행정또는사회복지	2				2	
농림운영	4				4	
사무운영	101	39	13	4	44	1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87	3	3	2	479	
행정	14		1		13	
공업	51				51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나군 소계란 아래 통계자료관리요원란,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민방공경보통제요원란 아래 특수교사란을 삭제하며, 다군 소계란, 다군 소계란 아래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61	27	4	2	128	
나군 소계	67	23	4	2	38	
통계자료관리요원	3	2			1	

동물사육	20				20	
------	----	--	--	--	----	--

다균 소계	90				90	
-------	----	--	--	--	----	--

동물사육	44				44	
------	----	--	--	--	----	--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란, 소방위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란 중 “소방정또는기술서기관”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66		7,268		
---------	-------	-----	--	-------	--	--

소방령	202	30		172		
-----	-----	----	--	-----	--	--

소방위	548	38		510		
-----	-----	----	--	-----	--	--

소방사	3,582	26		3,556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소방정또는기술서기관”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규제개혁 · 지하안전관리 · 재난대응 등 시정 주요사업의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에 대응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기술서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 ·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일반직 직렬·직급 간 조정

- 3급 +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3명, 7급 △5명, 8급 △5명, 9급 △2명
-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1명

나. 소방재난본부 화재감정연구센터 신설 관련 정원 확보 및 119안전센터 현장 인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

- 소방령 +1명, 소방위 +33명, 소방사 △34명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25.6.2.)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 중 '기술서기관' 을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708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제3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및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실시 전에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창의규제담당관은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창의규제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중요문서를 고시·공고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사전협의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창의규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1항 중 “조례 제2조제2호”를 “제5조제4항의 사전협의의 검토결과가 조례 제4조제2호”로, “에 대하여”를 “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제2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의 수당) ① 규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규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및 수당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심사 ‘사전협의’ 조항 신설

나.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및 수당 지급기준 규정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